

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516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1999년 12월 11일

제안자 : 총무보사위원회

위원장 황의형

1. 수정이유

-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시의원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기금에 대한 사전 의회의 적절한 통제를 위해 시의원을 심의위원회에 추가하고 이와 수반된 조문을 정리함.
- '99년 8월 31일 공포, 2000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결산 조항과 불부합한 결산서 작성시기를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중에서 선출토록 하고 위원중 총무과장과 회계과장을 삭제하여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인을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며 또한 위촉대상자중 규정이 애매한 관련 분야 종사자를 체육분야 종사자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.(안 제7조)
-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점을 출납폐쇄후 3월 이내로 규정한 것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함.(안 제13조제1항)

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3항중 “총무국장이 된다”는 “위원중에서 선출한다”로 수정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명
2. 총무국장 및 해당부서 과장
3. 체육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써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.

안 제13조제1항의 “3월 이내”를 “80일 이내”로 수정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~② (생략)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<u>총무국장이 된다.</u>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u>1. 총무과장 회계과장 문화체육과장</u> <u>2. 관련 분야에</u> 종사하는 자로써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자 ⑤ (생략) 제13조(기금의 결산) ①시장은 출납 폐쇄 후 <u>3월이내에</u>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~③ (생략)	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..... <u>위원중에서 선출한다.</u> ④..... <u>1.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명</u> <u>2. 총무국장 및 해당부서 과장</u> <u>3. 체육분야</u> ⑤ (현행과 같음) 제13조(기금의 결산) ①..... <u>80일이내에</u> ②~③ (현행과 같음)